
영국의 중요성 적용에 관한 지침

영국공인회계사회(ICAEW) 실무지침(Tech 03/08호)

2012. 1.

국가회계기준센터

◆ 목 차 ◆

내용	문단
서론	
범위	1-4
중요성의 정의	5
일반적 고려사항	6-8
중요성의 적용	9-17
이용자	18-22
중요성의 결정요소	23-25
크기	26-27
속성	28-31
상황	32-35
반기 재무제표	36
중요성에 관한 결정	37-42
결정의 입증	43

영국 기관의 재무보고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관한 지침

서론

실무지침 32/96호(Tech 32/96호) “재무보고에 있어서의 중요성의 해석”의 원칙은 처음 제정된 후 10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타당성이 있으며 목적적합하다. 그러나 지침에서 인용한 영국 문헌의 상당수는 더 이상 최신의 내용이 아니며,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ICAEW의 재무보고부문(Financial Reporting Faculty)의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mmittee)는 관련된 최신 문헌과 IFRS를 참조하고, 그 원칙이 중요성에 관한 최신 견해와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의 초안은 2007년 6월 실무지침(안) 01/07호(Tech 01/07호)로 발행되어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인 실무지침 03/08호(Tech 03/08호)가 발행되었다. 인용한 회사법(Company Law), 회계 및 감사기준(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과 기타 회계, 감사 및 규정에 관한 문헌과 자료는 2008년 6월 9일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 기관의 재무보고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관한 지침

범위

1. 본 지침은 재무제표 작성자들(“작성자”)을 위한 것이다. 본 지침은 1999년 12월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에서 발행한 재무보고를 위한 원칙 보고서(Statement of Principles for Financial Reporting, “원칙보고서”라 함)의 관련 논의를 포함하여, 재무보고에서의 중요성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이는 중요성의 정의와 해석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2001년 4월 채택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개념체계”라 함)의 근본원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보고서는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해서도 유용할 것이다.
2. 본 지침은 정확하고 공정한 관점의 표시를 목표로 기업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영리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로 언급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가 다르더라도 본 지침의 원칙은 다른 조직(예: 자선단체, 연금제도, 정부부처, 지방당국, 공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하 20, 22, 38, 39 문단 참조)
3. 본 지침에 명시된 원칙은 또한 운영 및 재무검토, 사업검토, 반기보고서, 임시 경영보고서, 재무제표일 이후 사건에 관한 정보나 기업지배구조 공시내용과 같은 기타 정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4. 감사인은 중요성에 관한 판단을 할 때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지만, 감사실무위원회(Auditing Practices Board: APB)가 발행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따라서 감사측면의 중요성은 본 지침에서 다루지 않는다.

중요성의 정의

5. 중요성 개념은 정보를 보고하는데 기본이 된다. 회계기준위원회(ASB)의 원칙 보고서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해석한다.

3.28 중요성은 특정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다. 위의 문단에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특성을 설명했다면, 중요성기준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내용이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3.29 그러므로 중요성은 재무제표에 제시되는 모든 정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품질을 의미한다. 나아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재무제표에 제시되는 경우, 그 결과 불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 다른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30 어느 정보항목의 왜곡표시나 누락이 경영자의 수탁책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면 해당정보는 재무제표에 있어 중요한 정보이다.

3.31 정보의 중요성 여부는 사건의 특정 상황에서 판단되는 해당 항목의 규모나 속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특정 어느 한 요인보다는 이런 요인들이 결합하여 중요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a) 항목의 크기는 전체 재무제표와, 이용자의 재무제표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이용가능한 기타 정보의 측면에서 판단된다. 이는, 예를 들어, 해당 항목이 추세평가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타 유사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b) 다음과 관련한 정보항목의 속성을 고려한다.

(i) 해당항목을 발생시킨 거래나 기타 사건

(ii) 해당 사건이나 거래의 적법성, 민감성, 일상성, 잠재적 결과

(iii) 관련 당사자의 신원

(iv) 영향을 받는 특정 제목과 공시내용

두 개 이상의 유사한 항목이 있는 경우, 개별항목 뿐만 아니라 해당항목 전체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 고려사항

6. 중요성은 어느 항목의 크기, 속성,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중요성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수량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항목의 속성과 상황은 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일반적인 수리적 정의가 가능하지 않다.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느 항목의 중요성 여부에 대해 사람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관련 정보를 전부 고려하고 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종속되어 있는 특정 항목의 최종 처리와 함께 중요성은 종종 일정 범위의 잠재적 가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7.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정보가 재무제표나 기타 정보의 이용자들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있다. 원칙보고서의 제1장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목표는 다양한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고기관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유용한 기관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8. 일관되면서 적절한 검토를 거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지침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자들이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투자 유지 혹은 매도 결정이나, 경영진의 재임용 혹은 교체 결정과 같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보의 영향이나 유용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규정이나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작성자들은 정보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수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에 사용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소한 조정이 매수결정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매수가격을 변경시킬 수 있다.

중요성의 적용

9. 재무보고에서 중요성 개념은 다음과 관련하여, 특히 오차, 불확실성, 차이와 오류에 적용된다.

(a) 거래의 종류

- (b) 계정잔액
- (c) 공시사항
- (d) 전체 재무제표

10. 다른 당사자와의 개별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확해야 하므로 중요성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항목들은 미래사건의 결과에 대한 최선의 예측, 공정가치, 다양한 활동과 기간에 대한 비용과 수익의 적절한 배분에 근거하여 회계기록에 표시된다. 그러한 예측은 주관적이며, 중요성 개념은 관련항목의 속성을 반영한 적절한 정확성 오차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된다.
11. 중요성의 임계치(경계점) 및 오차범위의 적용은 기업의 지배구조, 상업위험의 관리, 경영의사결정의 근간이 되는 내부 및 외부보고의 기본이 된다. 경영자들은 목적적합한 사항을 강조하고 관련 없는 세부사항은 생략하는 내부보고서를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다음의 역할을 하는 경영시스템과 통제로 기본적인 회계기록을 보완한다.
 - (a) 집합적으로 봤을 때 중요할 수 있는 회계기록의 정보를 요약
 - (b) 그러한 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방지하고 발견
12. 내·외부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보고시점이 가까워질 때 유사한 항목을 모두 합하여 선택된 중요성 수준과 비교될 수 있도록 누계정보를 위한 통상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계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써 유사한 항목을 집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비교적 낮은 임계치를 사용한다면, 누적적인 누락(1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것을 포함)과 기타 오류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일 파운드나 천 파운드와 같이 화폐단위를 선택하여 근사치로 어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택된 단위는 충분히 낮게 설정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정확도와 세부사항의 손실이 명백히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도록 한다.
13. 오류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거 수정되지 않은 오류의 영향과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4. 외부보고의 경우, 특정 회계정보 및 기타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에 대한 법률과 규제가 있다. 법률과 규제에는 보통 그러한 규정이 중요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계정과목 형식에 나타난 개별 항목을 기업관련 규정에 포함할 필요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5.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ASB와 IASB의 재무보고기준과 이에 대한 각각의 해석(“재무보고기준”), 및 다양한 상황에서 기업관련 규정에서 또한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16. 재무보고기준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로 중요성 관련하여 결정이 필요하다. 작성자들이 어느 한 기준의 개별 조항(즉, 측정과 관련된)을 적용하는 경우에 중요하지 않은 특정 공시를 하는 것과 같이 해당 기준의 다른 모든 조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ASB의 “회계기준서문”의 문단 20에 이러한 결정의 중요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재무보고검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FRRP)는 여기서 재무보고기준이나 기업관련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규정으로부터의 중대한 이탈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무제표가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으로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FRRP는 영국 GAAP와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모두 검토한다.)
17. 기준이 아닌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공시와 관련하여 (이사의 수입, 감사의 보수, 직원비용 등) 중요성개념의 적용은 관련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시는 주로 회계책임 목적에서 요구되며, 중요성은 그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이하 27문단 참조)

이용자

18. 원칙보고서는 주로 보고기관의 재무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해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재무제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러한 재무제표는 구성원들 전체 집단에 제시할 완전한 연차재무제표가 될 것이다.
19. 원칙보고서는 재무제표가 광범위한 외부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원칙보고서는 “... 투자자들이 보고기관의 재무성과와 재무 상태에 갖는 관심에 초점을 맞춘 재무제표는 사실상 모든 이용자가 기관의 재무성과와 재무 상태에 갖는 공동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라는 (반박의 여지가 있는) 가정을 언급한다. 그러한 이용자는 투자자, 잠재투자자, 종업원, 대출기관, 공급업자와 기타 외상매입처, 정부와 정부기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인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작성자들은 관련된 이용자들을 파악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고의사결정의 목적으로 이용자집단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집단에 대한 법적 주의의무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 원칙보고서와 체계에 나타난 위원회의 다음 주장은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광범위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경감시킨다.

(a) 재무제표가 모든 이용자들의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원칙 보고서 문단1.8과 체계 문단 10)

(b) 보고기관의 재무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재무제표는 사실상 모든 이용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원칙보고서 문단 1.11과 다른 용어로 체계 문단 10에 게재)

(c) 이용자들은 경영, 경제활동과 회계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정보의 연구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가정한다.(원칙보고서 문단 3.27(c)과 체계 문단 25)

21. 그러므로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와 기타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의존하는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부지런한 이용자집단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측한다. 그러한 이용자들은 재무제표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추정을 하거나 미래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 집단에 다수의 이용자가 존재할 경우에 대표이용자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성자들은 하나의 가설상의 이용자에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매입 또는 매도 의사결정의 직전에 있는 이용자들은 보고된 수치나 공시내용의 작은 변화에도 의사결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22. ASB(와 IASB)는 위험자본의 제공자를 재무제표의 주된 이용자로 인식한다. 그 결과, 재무제표의 작성자들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무성과, 재무 상태, 재무적응성 및 경영자들의 수탁책임(본 지침에서 일반적으로 “회계책임”이라 지칭) 이행 평가에 대한 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위험자본 제공의 중요성이 낮은 기관(자선단체, 연금제도, 정부기관)에서도, 동일한 포괄적인 재무 및 회계책임 문제가 여전히 관련 주된 이용자 집단에 가장 흥미로운 논제가 될 것이다.

중요성 결정요인

23. 어느 항목의 중요성의 결정요인은 “사건의 특정 상황”(원칙보고서 참고)이나

“주변상황”(IAS 1의 문단 11 참고) 내에서 판단되는 항목의 크기와 속성이다. 중요성 검사는 양적, 질적 검사이며, 속성과 상황이 충분히 중요한 경우에는 항목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고려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어느 항목을 별도로 공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판단은 기간 내와 한 기간에서 다음 기간까지 일관되게 적용된다.

24. 어느 항목이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속성이나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하 문단 28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한 항목의 속성평가가 항목에 대하여 별도공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5. 그러한 항목의 예로는 불법거래, 벌과금, 위법배당 등이 있다. 질적 항목의 또 다른 예로는 당해 설명으로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정책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적제약의 결과 영업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규정의 위반을 공시하지 않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크기

26. 주요 재무제표에서 인식되는 항목의 크기는 화폐가치로만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우발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의 작성자들은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된 잠재 금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가격이 부과되지 않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작성자들은 관련된 잠재 금액에 유념해야 한다.
27. 중요성의 계량화가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반면, 중요성은 결코 절대적인 크기만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없다.
 - 1백만 파운드는 큰 금액이지만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매출의 왜곡표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다.
 -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항목의 속성과 상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의 임계치는 중요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거의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1만 파운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임원보수를 공시함에 있어 부당하게 누락된 현물급여와 관련된 것이라면 대규모 다국적기업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후자의 내용은 경영진의 회계책임이나 기업의 지배구조가 쟁점이 되는 경우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공시 측면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다.(상기 문단 17참조)

속성

28. 항목의 속성은 다음의 사항으로 나타난다.

- (a) 해당 항목이 발생하게 된 거래나 기타 사건
- (b) 해당 사건이나 거래의 합법성, 민감성, 일상성과 잠재적 결과
- (c) 관련당사자의 신원
- (d) 영향을 받는 계정표제와 주식공시

29. 기록되지 않은 판매와 관련매출원가, 혹은 특정 항목과 그 항목의 세금효과처리 속성이 다른 항목을 별도로 고려했을 때 중요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항목들을 상쇄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유사한 속성을 가진 항목의 중요성은 집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매출의 거래건수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들의 중요성은 집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0. 원칙보고서는 “재무제표의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나타내고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중요성의 범위 내에서 해당정보가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는 함의를 갖는다. 중요한 오류가 있거나 *중요성 외의 이유로 인해 누락된 정보*는 재무제표의 오류나 해석상의 오류를 야기하여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신뢰할 수 없으며, 불완전해질 수 있다.(3.16 문단, 이탤릭체로 강조) 추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거나 선택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UK GAAP에 맞지 않는다.

31. 이는 또한 다른 관련 문헌에서 강조되었던 문제이다. 예를 들어, APB의 “*적극적인 수익관리*”는 “원칙적으로 APB는, 감사가 발견한 모든 왜곡표시를 이사와 경영진이 교정해야 한다고 믿는다(문단 35).”고 말한다. 그리고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저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이사와 경영진이 정형화된 편의에 따라 판단하거나 결정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문단 47).”

상황

32. 정보의 중요성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궁극적인 영향 즉, 잠재적인 영향과 관련해서만 판단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크기인 주어진 항목의 중요성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계 및 기타 정보의 맥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33. 어느 항목의 직접적인 맥락은 그 기관의 재무제표이다. 일부 재무보고기준과 관련 지침은 중요성을 판단하고 특정 항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공시사항과 표제 이외의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맥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나 그 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a) 개별 공시사항
- (b) 주요 내역서의 제목과 소개
- (c) 관련된 (하나의) 주요 재무제표 전체
- (d) 전체 재무제표
- (e) 해당 재무제표가 표시하는 기관의 재무상태나 영업규모

34. 재무보고기준(FRS) 제8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해설 중 문단 20은 추가적 지침을 제공한다. 이 문단은 특수관계자 거래의 중요성은 보고기관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임원, 핵심관리자 혹은 다른 책임자인지의 여부와 같은 개인 특수관계자와 관련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재무보고기준(FRSS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for Smaller Entitie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제상의 이유나 거래의 속성 등으로 인해 관련된 특수관계자 공시가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시가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러한 점이 해당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단일기간에 대한 단일기관의 재무제표의 가치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검토한다. 그러므로 작성자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a) 상대적 수치와 추세 정보
- (b) 목적 적합한 경우, 관련된 추정과 예측을 포함한 기대
- (c) 비교 가능한 기관들의 재무제표

(a) 경제 및 산업 배경 정보

반기재무제표

36. ASB의 보고서 “반기재무보고서”(2007년 7월)는 “중요성이 전체연도의 예상 성과와 재무상태와 관련하기보다는 반기의 성과와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28 문단).”고 언급하고 있다. 재무데이터의 임시적 측정은 연간측정보다 예측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으며, 이는 반기나 그 외의 중간기간의 중요성평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중요성에 대한 결정

37. 이용자들의 의사결정방식을 반영하고자 하는 규범적인 규칙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으며, 작성자들이 판단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경감시켜줄 수 없다. 작성자들은 이용자들을 고려하고 재무제표 내의 개별항목의 크기, 속성과 상황을 반영하는 기관 고유의 지침을 개발하고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한 지침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추정치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추정치를 근거로 특정 상황에 대한 후속적인 판단이 계량화된다. 작성자들은 재무제표의 작성기간 동안 표현되는 중요성에 따라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중요성관련 결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개괄적 기준은 결과적인 재무제표가 기업관련 규정이나 다양한 여러 기관의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으로 표시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38. 중요성 지침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될 수 있다.
- (a) 관련된 이용자들은 누구인가?
 - (b) 의사결정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c) 어떤 종류의 재무정보가 이용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이용자와 영리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정보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 (d) 주어진 항목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맥락은 무엇인가?
 - (e) 항목이 중요성 측면에서 임계치에 도달하는 가치범위는 어디인가?
 - (f) 이러한 중요한 범위의 특정 항목을 어떻게 결정하고 보고할 것인가?
39.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작성자들의 인식은 다음에 기초할 수 있다.

- (a) 이용자와의 일반적 논의내용과 회사의 지배구조관련 절차의 결과로 수집된 이용자의 기대와 관련된 기타 정보
 - (b) 특정 공시내용, 수치, 비율, 추세에 대한 언론과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같은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대응과 투자액의 유지 혹은 매도, 경영진의 재임용 혹은 교체결정에 대한 영향의 관찰
 - (c) 특정 뉴스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 (d) 유사한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이용자의 고유한 반응과 태도
40.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직접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다. 어느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 재무제표에 근거한 계약의 준수에 달려있을 때, 이러한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계약의 위반여부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 은행가, 채권자를 포함한다. 이들은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한 계약조항계산에 사용된 수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어느 항목이 계약의 불이행의 야기하게 되는 것인지 조항을 준수하였음을 확인시키는 것인지를 비교한다면, 해당항목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것이다.
41. 어떤 결정적인 임계치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평가하면, 매우 낮은 중요성 수준 또는 정확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요구가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추세가 반전되고 이익이 손실로 전환되며, 규정상 구체적인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채무계약의 이행이 불확실해지는 상황과 같은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성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
- (a) 결정적인 구분의 어느 한 편에 잘 못 속할 가능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확도가 요구되는 분야에 공평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b)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나 오류가 누적되어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기 문단13 참조)
 - (c) 정보의 잠재적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 생산 상황과 정보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수반하여야 신뢰성있는 정보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상기 문단26 참조)
42. 작성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동향이나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의 이익의 측면에서 한 기업의 재무제표 항목의 중요성을 특히 중시하기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고려사항은 한계수익점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특히 적합할 수 있다.

결정의 입증

42. 재무제표 작성자들은 개인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조직입장에서,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지배적인 상황에서의 해당기관의 크기와 복잡성에 맞게 중요성관련 원칙, 정책, 지침과 내려진 주요 결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조치는 FRRP와 같은 규제기관을 상대함에 있어 적절한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